

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코로나19 관련 「예술강사 시수 소화방안」 시행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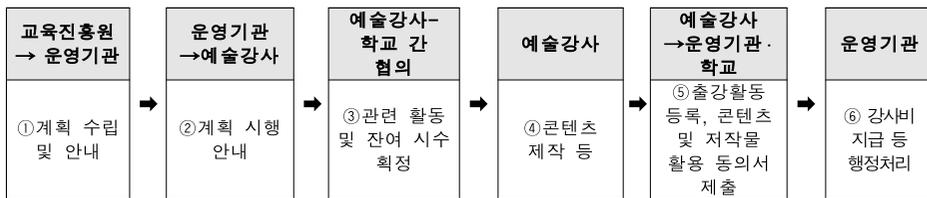
2020.7.30.(목)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

□ 추진배경

- 등교개학에도 불구하고 **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예술강사 출강 정상화 불투명**
 - ※ 교육부, 교육청 협조 통해 시수 결손 최소화 권고 시행하였으나, 학교의 노력만으로 시수 소화 어려울 것으로 예상
-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배치 잔여시수를 활용 및 예술강사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수 손실 방지 등 예술강사 수입 보전 필요

□ 추진개요

- **건 명** : 코로나19 4차 대응 예술강사 시수 소화 방안
- **추진목적** :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배치 잔여시수를 활용, 예술강사 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수 손실 방지 및 예술강사 수입 보전
- **소화방안**
 - 예술강사 출강 인정 범위를 강의 외 학교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으로 확장
 - 콘텐츠 제작·활용 유형의 확대 운영
 - 예술강사 출강기간 연장('20년 12월까지 ⇒ '21년 1월까지/1개월 연장) 등
- **추진절차**



□ 세부 추진방안

1) 예술강사 출강 인정 범위 유연화

- 지원교과 외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출강 행위로 폭넓게 인정
 - 캠프, 축제, 자유학기제 수업, 방과 후 교실, 연구활동 등 학교와 강사 간 협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출강 시수 인정
 - ※ **강사와 학교 간 합의 있다면 최대한 유연하게 인정**
 - 출강 결과 등록 및 교통비 산정 등 운영 방식은 등교수업과 유사하게 운영
 - 강사비는 1시간 활동 당 1시수 인정, 시수 당 43,000원 강사비 지급
 - 근무장소는 출강학교로 제한되며, 교통비는 대면수업과 동일기준 지급
 - 예술강사 근태관리 시행, 학생만족도 조사 미시행
- **교육일정과 무관히 강사에게 다양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제작 요청 가능**
 - 학교가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마련 기타 목적으로 교육일정과 무관하게 필요한 콘텐츠의 제작을 예술강사에게 의뢰
 - 출강 결과 등록 기타 운영 방식은 ‘콘텐츠 제공·활용’ 유형과 동일
 - 1차시분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분량의 콘텐츠 1개당 4시수의 강사비 지급
 - 근무장소의 제약 없으며, 별도 교통비 지급 없음
 - 콘텐츠 제출일을 출강일로 등록 기재, 1일 최대 8시수까지 인정가능
 -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작성 필요

2) 콘텐츠 제공·활용 유형 확대 운영

- 예술강사의 배치시수 중 잔여시수를 파악하여, 해당 시수 상당의 콘텐츠를 운영기관에 공급함으로써 수업시수 소화

○ 세부 추진절차

- ① **예술강사-학교 협의를 통하여 예상 잔여시수 파악(예술강사, 학교)**
 - 학교-강사 간 협의를 통해 배치시수 중 연중 출강(대면, 원격 등) 가능한 시수를 파악
 - 소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시수를 제도 시행 대상 시수로 확정
 - ※ 예) A강사의 하반기 계획시수(80시수)에 대해 학교와 협의 후 교육시수(50시수), 잔여 예상시수(30시수) 규모 결정 ⇨ 제도 시행 대상 시수(30시수) 확정
- **학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대상 시수 확정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(7월 중)에 잔여시수 파악 필요**
 - ※ 잔여시수 파악 대상 기간은 분기(7~9월) 또는 반기(7~12) 등으로 자율 설정 가능
- ② **예술강사 별 콘텐츠 제작 계획 운영기관 제출(예술강사→운영기관)**
 - 총 계획시수 중 학교와 협의된 교육시수와, 제도 시행 대상 시수 규모 운영 기관에 고지 필요

- 출강일정 및 월 시수제한 등 고려하여 콘텐츠 제작 및 제공 계획 운영기관에 제출 (월별출강계획 제출 시 포함)

※ 소속 학교 정보 포함하여 제출

※ 제도 대상 시수 및 계획 제출은 월별, 분기별 등 강사-학교 간 협의 내용에 따라 설정 가능

③ 예술강사 콘텐츠 제작·제출(예술강사→운영기관·학교)

- 8개 장르를 기반으로 원격수업 1차시에 활용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운영기관 및 학교에 제출

※ 배치 학교의 경우 해당 콘텐츠 이용 자격 부여(단, 이용 희망 학교의 경우 저작권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작성 필요)

※ 콘텐츠의 종류는 영상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며, 분야별 특성 등 고려하여 1차시분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(시청각 자료 전반)의 교육자료 제작 및 제출 가능

※ 지역운영기관 저작물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양식은 추후 별도 배포 예정

※ **지역운영기관은 최대한 유연히 콘텐츠 제작 및 제출행위 인정**

- 제출된 콘텐츠는 지역운영기관이 검수 및 목록화(제작 계획서 취합)하여 관리

- 운영기관은 예술강사의 제작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 시 예산 활용 가능

예) 촬영 스튜디오 지원, 콘텐츠 제작 관련 연수 지원 등

※ 소속 예술강사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 및 예산집행 가능하나, 개별 예술강사가 제작 업체를 섭외하고 전문가 활용한 경우 비용 지원 불가

④ 콘텐츠 제공에 따른 강사비 지급 등 행정처리(운영기관)

- 지역운영기관이 월별 제출실적 취합하여 강사비 지급

- 콘텐츠 1차시분 제공 당 4시수 분 강사비 지급 처리(기 운영 기준과 동일)

- 콘텐츠 제공시수와 교육시수 합산하여 **‘등록월 기준 월 시수제한 관리’ 필요**

3) 교육기간 연장(~ '21.1.31) 시행

○ 사업 시행기간 연장(~ '21.1.31.) 및 예술강사 출강기간 동반 연장 추진

- 잔여 배치시수가 있는 예술강사-학교 간 상호 희망하는 경우, 예술강사의 출강기간(근로계약기간)을 익년 1월까지로 한시적 연장 가능